



-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성녹영 과장(042-481-6840), 이호종 사무관(6844)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진단처 김종교 처장(055-751-9510), 이준호 팀장(9511)
- (신용보증기금) 기업지원부 오재택 부장(053-430-4491), 엄정원 팀장(4494)
- (기술보증기금) 창업성장부 황철호 부장(051-606-7650), 허윤석 팀장(7651)

“경영개선 건강진단 도입으로 기업부실을 예방한다” - 2015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015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과 함께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은 사람이 건강진단을 통해 병을 예방하고 체질개선을 하듯이,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상의 경영 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2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 진단실적('12.2~'14.12) : 21,590개사

□ 금년에는 45억원을 투입하여 총 5,350개사를 지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통해, 기업특성에 맞는 내실있는 진단 및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금년부터는 「경영개선 건강진단」을 도입하여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기보)의 기존 관리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정체, 위기 관리 역량 저하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전적·예방적 경영개선을 통한 기업부실 예방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연중 수시 신청접수)

* 중진공(중진공 조기경보시스템의 예비경보기업), 신보(경쟁력 향상프로그램의 선정요건을 만족하는 기존 보증기업), 기보(기보 조기경보시스템의 관찰대상기업(S3), 중점관리기업(S4))

- 한편 금년에도 구조적 경영애로 기업에 대해 「구조개선 건강진단」을 실시한다.(연중 수시 신청접수)
- 아울러 올해에는 건강관리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높은 양질의 진단보고서가 제공된다.
 - 과거의 복잡한 진단절차를 「①신청(기업)→②진단(진단기관)→③진단보고서 및 정책정보 제공(진단기관→기업)」으로 단순화하여,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행정부담을 완화하였다.
 - 그간 정보제공 기능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41개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부터는 진단전문가가 전체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필요한 정보를 진단보고서를 통해 기업에 제공한다
- 올해 건강관리시스템은 3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고, 건강관리를 희망하는 기업은 매월 1일부터(3월은 2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신청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 진단기관 : 자금(중진공 지역지(본부) : 온라인 신청), 보증(신보 영업점, 기보 지점), 기타 중소기업 지원사업(지방중기청)
- 한편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건강관리는 ‘12년 이후 적은 비용과 신속한 진단으로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하였고, 특히 금년에 도입하는 경영개선 건강진단은 경영부실 징후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큰 효과가 있어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5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공고 1부. 끝.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재도전성장과 이효종 사무관(☎ 042-481-684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2015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4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2015년도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계획

1. 개요

- 사람이 건강진단을 통해, 큰 병을 예방하고 체질 관리를 피하는 것과 유사하게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영위기를 예방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애로사항 해결을 통하여
-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함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이란?

◆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보제공 방식의 『문제해결형 시스템』

기업건강 진단



- 위기관리역량진단
- 기업경영전반 분석 (기술·경영전문가)

진단 보고서 작성



- 종합진단표 작성
- 성장로드맵·처방전 작성 (진단기관)

맞춤형 정보제공



- 자금, 보증, R&D, 마케팅,
- 공정혁신, 정보화, 사업전환 등 (지원기관)

<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체계도 >

구 분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 언론,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공동운영기관
▼		
신청·접수	○ 진단기관 상담·신청 * 진단기관: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 신보 영업점 등, 기보 지점	기업→진단기관
▼		
진단 실시	○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최대 4MD 이내)	진단기관 (전문가)
▼		
진단완료	○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 ○ 진단보고서 검토·보완	전문가 진단기관
▼		
맞춤형 안내	○ 진단결과 프리젠테이션(PT) 및 진단보고서를 기업에 송부	진단기관→기업

2. 시스템 단계별 내용

가. 기업건강 진단

1) 신청대상 및 신청·접수

가) 신청대상

(공통요건)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별표1)

- 단,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이외의 업종,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별표 2)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구조개선 건강관리 대상)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등급(Fast-Track 프로그램 적용), C등급(공동 또는 단독 Work-out 선정), D등급(기업회생절차 등)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

- * B등급 :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
- C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
- D등급 :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 신청대상 :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

- ① B등급중 '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Fast-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 ② C등급중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③ C등급 중 은행권에서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④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

☞ 신청제외

-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A등급)
- ② C등급 중 공동워크아웃기업 또는 단독워크아웃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 ③ B등급 중 Fast-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
-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

○ 구조개선 건강진단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별표 제1호의 <진단신청 제한대상> 중 제1호, 제5호, 제7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진단신청이 가능)

☞ 중소기업 건강관리 요령 별표 제1호의 <신청제한 대상> 중 제1호, 제5호, 제7호

- ① 제1호 :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② 제5호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 · 법정관리 · 기업회생신청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 ③ 제7호 :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우대업종) 뿌리산업(주조, 금형 등) 영위 소기업(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 및 전략산업 창업기업(업력 7년 미만), 적합업종(제조업에 한함) 우선 지원

1」 뿌리산업 : 금형, 주조,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2」 전략산업 : ① 녹색 · 신성장동력, ② 부품 · 소재, ③ 지역전략 · 연고산업, ④ 지식서비스, ⑤ 문화콘텐츠, ⑥ 바이오, ⑦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뿌리산업, 전략산업,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

나) 신청·접수

- (일반 건강진단 분야)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

- '15년부터 진단분야별로 신청·접수기관이 다름에 유의

☞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별표 4)

- ①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자금), ② 신용보증기금 영업점(보증), ③ 기술보증기금 지점(보증), ④ 지방중소기업청(기타 중소기업 지원사업)

- (구조개선진단 분야)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 또는 'Fast-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에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 의결'을 거쳐 주채권 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신청

- (경영개선진단 분야) 진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보, 기보)의 관리업체 중 성장정체, 위기관리역량 저하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다) 신청·접수기간

- 일반 건강진단 대상기업 및 경영개선진단 대상기업 :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10일

- 구조적·일시적 경영애로기업 : 3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

2) 진단 실시

가) 진단착수

-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내부인력,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진단 실시 일수

-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Hour 기준으로, 최대 4Man-Day 원칙이며,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

다) 진단비용 및 부담

- 진단비용은 30만원/1MD 원칙

- 진단비용 부담

- 일반 건강진단

- 2~4 MD 이내 : 진단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조정

진단신청 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2MD	3MD	4M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건설업(F) 中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p>	5인 미만	5인 이상 ~ 50인 미만	50인 이상

- 구조적 경영애로기업(구조개선진단)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 경영개선진단 기업

-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10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

라) 진단방법 및 내용

- (진단방법)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분석

- (진단내용)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위치, 경쟁력, 위기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진단
 - 기술·산업 분석, 핵심역량분석, 경영성과분석 등
 - 기업 성장통 원인,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

나. 보고서 작성

1) 진단보고서 작성

- 전문가는 '진단시스템'을 활용하여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하고, 진단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공휴일 포함)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

<진단보고서 주요 내용 >

- 1] 기업현황 : 기업개요, 연혁 및 조직, 주주현황, 공정 및 설비현황
- 2] 기업환경 : ① 기술 및 산업분석(제품공급체계,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 산업동향 등), ② 핵심역량분석(기능별 역량분석, 기업경쟁력분석, 기업성과분석 등), ③ 경영성과분석(원가경쟁력, 투자자산효율성, 매출원가 등)
- 3] 개선전략 :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세부실천과제
- 4] 심층분석(옵션) : 재무회계, 영업마케팅, 인사조직, 생산관리, 기업특화분야 등

* 경영개선진단은 접수 후 45일 이내(공동진단이 있는 경우 20일 추가), 구조개선진단은 접수 후 70일 이내 보고서 작성 완료

2) 맞춤형 정보제공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와 '중소기업 지원시책(중소기업청편)'을

참조하여 보고서 내 '정보제공사업'을 작성

- 진단기관 담당자는 전문가가 작성한 '진단보고서'를 검토·보완하여 진단보고서 완료

다. 기 타

1) 정보제공 안내 방법

- 진단기관은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진단보고서를 전자파일 형태로 진단기업에 송부
- 진단기관은 진단보고서의 처방내용 중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확인하여 기업에 유선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회신

2)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 실시

가) 사후관리 실시 및 기업현장 애로사항 해결

-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
 - 기업건강관리팀은 성과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기업데이터에 의뢰할 수 있음
 - 한국기업데이터는 재무·고용관련 자료를 기업건강관리팀으로부터 송부받거나, 직접 수집한 경우에는 성과점검 DB에 입력해야 함
- 공장설립, 노무, 보건·위생, 세무, 소방, 환경, 법무 등 기업현장 애로사항 동행해결 지원

나)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

- 기업건강관리팀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진단보고서 송부 및 PT실시 여부 확인, 필요시 맞춤형 안내 정보 제공
-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를 건강관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

다) 사후관리,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

-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 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

진단신청 대상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진단신청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①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	-제조업(C) 중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운수업(H) 중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예시)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

- ①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②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 단,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③ 휴·폐업중인 기업
- ④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 ⑤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제외함
- ⑥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⑦ 진단 신청일 현재,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단,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기업
 - 나.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 다.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 이 4회 이상인 기업

<별표 3>

중소기업 건강관리 우선지원 업종

1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구분	신성장동력	세부분류
녹색기술산업	신재생에너지	태양전지, 연료전지, 해양바이오, 해양에너지, 폐자원에너지,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 청정석탄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원전플랜트
	고도물처리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 친환경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 먹는샘물, 해양심층수,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LED응용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그린카, 선박·해양시스템, 첨단철도
	첨단그린도시	U-City S/W, U-City IT H/W, U-City IT 융합 H/W, ITS, GIS, 그린홈
첨단융합산업	방송통신융합	차세대 융합네트워크, 차세대 무선통신, 방송통신미디어
	IT융합시스템	IT융합, RFID/USN,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로봇응용	로봇응용
	신소재·나노융합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 Ionic Liquid(IL) 소재,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 나노융합 바이옴신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자원·신소재·장기,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 메디·바이오 진단시스템,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고부가식품산업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	글로벌헬스케어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교육서비스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해당사항 없음)
	콘텐츠·소프트웨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MICE, 생태관광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하며, <별표 1>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 배제
- * 녹색인증기업(녹색기술인증, 녹색사업인증, 녹색전문기업확인)은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
- * 녹색·신성장동력 중소기업 및 녹색·신성장동력 산업 기반 기술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진공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

② 뿌리산업의 범위

품목코드	산업명	품목코드	산업명
주조산업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4131	주철관 제조업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2922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용접접합산업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24322	동주물 주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9230	금속 주조 및 야금용 기계 제조업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금형산업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25999	그외기타분류안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열처리산업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25921	금속 열처리업	2629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9150	산업용 오븐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표면처리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0499	그외기타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25922	도금업	3012	자동차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020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25929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	303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3111	선박 건조업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3120	철도장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3131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소성가공산업		3132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조업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191	전투용 차량 제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뿌리산업의 범위(제 2조 관련)

3 부품·소재산업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부품·소재” 관련 산업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섬유제품제조업 (17)	섬유방적사(천연원료를 제외하고,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	1710
	섬유직물(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	1720
	염색·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호부,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	1740
	부직포 및 펠트	17993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17994 17999
펄프 종이 및 종이 제품 제조업(21)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21129
화합물 및 화학 제품 제조업(24)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유도체에 한한다)	24111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1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	24129
	무기안료, 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2413
	합성고무	2415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24152
	기초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2421
	농약 원제 및 중간체	24312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24321
	공업용 인쇄잉크	24323
	계면활성제	24331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24342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24392
	접착제 및 젤라틴	24393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24399
화학섬유	2440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25)	타이어 및 튜브	25111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25191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25199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25211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25212
	극세사 합성피혁	25213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25240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6)	공업용 박판유리(두께 1.5mm 이하에 한한다)	26111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26121
	판유리 가공품	26122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 공업용 도자기(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 구조용 정형 내화제품(전주내화물에 한한다) 기능성석회(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 연마휠 초미립 비금속광물(평균입경 1.0 μ m 이하에 한한다) 공업용 내화 단열재 탄소섬유 복합소재 비금속광물	26129 26213 26221 26312 26991 26992 26993 26994 26999
제1차 금속산업 (27)	합금철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일반철근,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 냉간압연 및 압출제품(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 철강선(보통강철선, 아연도철선, 철조망, 철망을 제외한다) 주조한 관연결류 강관(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 그 외 기타 철강제품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제품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철강 주조제품(회주철을 제외한다) 비철금속 주조제품	27112 27121 27122 27123 27131 27132 27191 27199 2721 2722 2731 273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핵반응기 부품 증기발생기 부품 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개를 제외한다) 금속 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 톱 및 호환성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스프링 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 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28121 28122 28131 28132 2891 2892 28934 28941 28943 2899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9)	내연기관 및 터빈 펌프 및 압축기 탭, 밸브 및 유사장치 베어링,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2911 2912 29130 2914 29150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 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 공기조화장치 부품(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 기체여과기 액체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 가공공작기계 부품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 무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2916 29171 29172 29173 29174 29175 29176 2919 292 293 29400 29511 29519 295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30)	컴퓨터 기억장치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 복사기 부품	30012 30013 3002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 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 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 절연 광섬유케이블 일차전지(리튬전지에 한한다) 축전지 전구 및 램프 부품 일반 조명장치 부품 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부품 자석 및 자석제품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311 312 31301 31302 31401 31402 31510 31521 3191 31991 31992 31993 31994 31999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32)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 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부품(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	321 322 323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의료용기기 부품(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 측정, 시험,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도안 및 제도기구를	331 332

구 분	적용범위(부품·소재)	품목코드
제조업(33)	제외한다)	
	광섬유 및 광학요소	33321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33322
	기타 광학기기 부품	33329
	시계 부품	3340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자동차용 엔진	34110
	자동차 부품	343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선박 구성부분품	351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35202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35310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353
	모터사이클 부품	35910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35920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36)	운송장비용 의자	36111

*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정책>중소기업건강관리 코너에 별도 공지

<비 고>

1.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
2.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3.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

4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

지역	전략산업	연고산업
부산	항만물류산업, 기계부품소재산업, 관광컨벤션산업, 영상·IT산업	해양바이오산업, 실버산업, 신발산업, 수산·가공산업, 섬유·패션산업 등
대구	메카트로닉스산업, 전자·정보기기산업, 섬유산업, 생물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비즈니스서비스업, 안경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전시·컨벤션산업, 출판·인쇄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대전	정보통신산업, 바이오산업, 첨단부품·소재산업, 메카트로닉스산업	영상·게임산업, 웰빙산업(실버벤처산업), 대덕구공예산업, 동구포도주가공산업, 첨단섬유소재산업, 안경산업 등
광주	광산업, 정보가전산업, 자동차·첨단부품소재산업, 디자인·문화산업	김치산업, 한복패션산업, 화훼·원예산업, 떡산업, 금형산업 등
울산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울산농산물, 울산축산업, 산악·산업·해양관광산업 등
강원	바이오산업, 의료기기산업, 신소재·방재·플라즈마산업, 관광문화산업	생명농어업, 건강채소·화훼산업, 토종동물산업, 목재·산림산업, 유기농업, 한방·약초산업, 기능성식품, 수산가공산업,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충북	바이오산업, 반도체산업, 차세대 전지,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바이오농업, 석회석신소재산업, 옥천묘목, 옷산업, 에코세라피건강산업, 약초산업, 태양광산업, 보은문화산업 등
충남	전자·정보기기산업, 자동차·자동차부품산업, 첨단문화산업, 농·축산 바이오산업	금산인삼산업, 보령머드산업, 공주자키드섬유산업, 계룡군문화엑스포, 청양칠갑산 그린투어, 서산육쪽미늘일류회사업, 예산사과가공·유통산업 등
전북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 생물산업,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 전통문화·영상·관광산업	익산귀금속·보석산업, 익산니트산업, 남원옷칠산업, 순창장류산업, 남원목기·허브산업, 진안홍삼·한방산업, 고창복분자산업, 임실유가공산업 등
전남	생물산업, 신소재·조선산업, 물류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자동차부품·소재	기능성식품산업, 토종약초생산·가공업, 나비디자인·천연염색산업, 도자기(삼강청자)산업, 전통애견(진도개) 산업, 양식어업,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 차류가공업,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문화·관광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섬유기계산업, 한방산업, 인삼가공산업, 문화축제 이벤트산업, 농산물가공·시설채소산업, 신재생에너지, 로봇산업 등
경남	지식기반기계 산업, 로봇 산업, 지능형 홈 산업, 바이오 산업	Silk산업, 석재가공산업, 축산사료유통산업, 녹차가공산업, 약초·자연건강식품산업, 마늘가공산업, 진주가공산업, 양파산업, 치과의료산업, 고령토산업, '지역정보포털'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제주	관광산업, 건강·뷰티 생물산업, 친환경농업생명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축산업, 수산업, 스포츠산업, 향토음식산업, 화훼산업 등

5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6 문화콘텐츠산업

구 분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출판·인쇄	18111	경 인쇄업
	18112	스크린인쇄업
	18119	기타 인쇄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18122	제책업
	18129	기타 인쇄 관련 산업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58112	만화 출판업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58121	신문 발행업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예술·공연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90121	연극단체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90123	기타 공연단체
	90131	공연 예술가
	90132	비공연 예술가
	90191	공연 기획업
	90192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게임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영화·비디오 및 애니메이션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방송·광고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60100	라디오 방송업
	60210	지상파 방송업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60222	유선 방송업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71310	광고 대행업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71393	광고물 작성업
	71399	그외 기타 광고업
캐릭터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 바이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C10	식료품 제조업
C11	음료 제조업
01110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01123	종자 및 묘목 생산업
01140	기타 작물 재배업
01299	그외 기타 축산업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21101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21220	한의학약품 제조업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412	농약제조업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22299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929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3999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중진공 기술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

- 바이오산업 :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생산하는 산업

8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구 분	적 용 범 위
융복합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 기술과 산업간,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① 농공상 융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 『산업융합 촉진법』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프랜차이즈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 가맹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한 업체(가맹본부)에 한함 * <u>가맹사업 해당 요건</u>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수행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 ⑤ 지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9 제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

업종명 (2단위)	품목수	품 목 명
식료품 제조업	19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국수, 냉면, 당면, 기타식사용조리식품(이동급식), 기타곡물가루(메밀가루), 김치, 단무지, 떡국떡 및 떡볶이떡, 도시락, 두부, 순대, 앙금류, 어묵, 전통떡, 햄버거빵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	공기조화장치(3)(에어핸들링유니트, 팬코일유니트, 향온향습기), 금형(2)(플라스틱금형, 프레스금형), 냉각탑, 냉동 냉장 쇼케이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6	주조(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6	고압가스충전업(6)(수소·질소·산소·이산화탄소·아세틸렌가스·아르곤가스)
전기장비 제조업	4	배전반(2)(고압배전반, 저압배전반), 송배전변압기, 절연전선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	플라스틱병, 재생타이어, 플라스틱 봉투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판유리 가공품, 기타 안전유리, 생석회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	골판지상자, 판지상자 및 용기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섬유제품제조업	1	기타가공사
음료제조업	1	원두커피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	비디오 도어폰
합 계	54	

[붙임 1]

[기업명]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회사연혁

년 월	주 요 내 용 (설립, 상호/대표자변경, 법인전환, 자본증자, 사업장/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

매출 및 직원 현황

구 분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단위: 백만원, 명)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월 현재	년간		
매 출	총매출액							
	수출액							
직 원	총인원							
	기술/생산직							

주요 생산제품(상품 및 서비스) 개요

제품용도 및 특성 (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	
제품생산공정도	*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시 장 상 황 (시장규모,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등)	
기술품질경쟁력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수요전망 및 판매계획	

*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

기술/ 경영지원	
인력/ 연수	
사업전환 /M&A	
기 타	

건강진단 신청기업 자가진단표

※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체 크																			
① 업종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여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style="background-color: #e0f2f1;"> <th style="width: 40%;">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th> <th style="width: 60%;">신청대상 제외</th> </tr> </thead> <tbody> <tr> <td>①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td> <td>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td> </tr> <tr> <td>② 도매 및 소매업(G)</td> <td>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td> </tr> <tr> <td>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td> <td>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td> </tr> <tr> <td>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td> <td>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td> </tr> <tr> <td>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⑦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 <td>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body> </table>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
	신청대상 업종(표준산업분류번호)	신청대상 제외																			
① 제조업(C) · 광업(B) · 운수업(H)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33409中),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52914), 주차장 운영업(52915)																				
② 도매 및 소매업(G)	주류, 담배 중개업(46102中), 귀금속 중개업(46109), 주류, 담배 도매업(46331, 3),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46463), 귀금속 도매업(46492), 소매업(47)																				
③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J)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5821中)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경비, 경호 및 탐정업(보안시스템 서비스업(75320) 제외) 및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75992), 포장 및 충전업(75994) 제외)																				
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																				
⑥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E)	-																				
⑦ 건설업(F) 中 산업플랜트 건설업(41225) · 조경 건설업(41226)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41224) ·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 소방시설 공사업(42204)	-																				
	진단신청 대상 업종 ①~⑦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예시 : 농·임·어업,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	-																			
② 업력	※ 확인방법 ①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 단, 2개 이상 업종일 경우, 매출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며, 업종별 매출액 산출은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 또는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기준 ②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좌측 통계분류 하단) → 검색 → 분류 내용보기(해설서)」 순으로 클릭한 후 트리구조에 따라 확인 * 문의 : 통계청 통계기준팀(042-481-2055) ※ 업종 또는 표준산업분류번호()	-																			
③ 상시근로자수	건강진단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현황 ※ 확인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간이세액(A01 코드)에 기재된 인원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등기이사는 제외)의 최근 3개월 평균 ※상시근로자수(명)	
④ 既 진단이력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	Y / N
⑤ 진단거절기업	진단기관에서 신청·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해당여부(단,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	Y / N
⑥ 휴·폐업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Y / N
⑦ 세금 체납	세금(국세 또는 지방세)을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Y / N
⑧ 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법정관리·기업회생신청·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Y / N
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Y / N
⑩ 매출액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Y / N
⑪ 자기자본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Y / N
⑫ 연체일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Y / N
⑬ 연체횟수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Y / N

※ 패스트트랙 적용기업, 구조조정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	체 크
① 구조조정 대상 기업 여부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 C, D등급에 해당되니까? ※ 확인방법 : 주채권은행의 추천 공문 또는 전화로 확인 ※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등급)	Y / N
② 채권금융기관 의결 여부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에서 귀 사에 대해 ‘중소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 하였습니까?	Y / N

※ 상기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진단신청기관의 조희사실이 다를 경우, 신청·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 방문상담時 제출서류(중진공·신보·기보는 해당없음)

- : ① 사업자 등록증명 ②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③ 국세 납세 증명서 ④ 지방세 납부 확인서

20 . . .

기업명 :

대표자 : (서 명)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청 귀중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제공·조회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위 기관에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청 귀중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 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 성명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意的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意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意的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인)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진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 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를 수집, 이용,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에 관한사항

- 수집·이용·제공·조회 목적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 지원금액 등)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bizdoctor.go.kr>),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sbc.or.kr>)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에 공개
- 수집·이용·제공·조회 정보 :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분야별 사업계획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등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신용정보업자(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진단전문가, 진단기관·공동진단기관·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위 기관에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진단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귀중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채권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수집·이용할 항목
 -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금융거래 정보(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 학력, 수상경력 등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진단기관, 공동진단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조회됩니다.
 - ▶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
 - ▶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 제공·조회 목적 :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당좌(가계 당좌) 예금 등
 -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제공·조회 동意的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意的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意的 효력은 소멸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조회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인)

※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의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안)」에 따라,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동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류 작성요령

1. 건강진단 신청서

○ 기 업 명	상호 전부를 기재(예 : (주)○○○, △△(주), (유)○○○, □□기업)
○ 설립일자	법인기업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시 개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 소 재 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 기재
○ 매 출 액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 종업원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기업애로분야	* 기업 애로분야 체크할 경우에는 붙임 1의 서식(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의 기술·경영애로사항의 분야 및 주요 애로사항을 필히 작성하여야 함 * R&D/정보화를 체크한 경우중 기술개발자금(R&D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음영색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진단기관에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표준산업분류번호, 기 진단여부, 투입일수, 진단관리 번호, 담당부서, 담당자를 작성함
○ 신 청 인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

2.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

○ 입력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 연 혁	설립, 대표자·상호·업종 변경, 자본증자, 공장신축,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 기재
○ 매출 및 직원현황	· 최근 3개년 수출실적과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향후 3개년 실적 전망을 기재하며, 신청서 작성 전월말일현재 기준으로 작성(다만, 매출실적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함) ·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일용직 제외)으로 기재
○ 자 금	정책자금 필요사유*와 융자신청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자금필요시기,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 소요내역, 담보종류, 융자기관을 기재 * 정책자금(신규융자, 융자금 상환유예)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보 증	신용보증(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 필요 사유*와 보증기관, 보증필요금액(시설 또는 운전자금 보증), 보증필요시기, 보증소요내역, 대출기관을 기재 * 보증(신규보증 또는 보증만기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p>○ 국내외 마케팅</p>	<p>국내외 거래선(판매처, 바이어) 발굴애로,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 국내외 상품 홍보 애로, 해외규격 인증획득 애로 등 국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현재 마케팅 준비상황, 마케팅 추진계획 및 마케팅 관련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p>* 국내마케팅 :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 공동 A/S 지원, 휴게소 중기제품 전용 Shop, 등 국내유통망 연결, 국내 마케팅 교육 등 지원</p> <p>* 해외마케팅 : 해외규격인증획득(CE, NTRL 등), 외국어 포장디자인, 해외시장심층조사, 전자무역 서비스, 해외전시회 참가,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글로벌 브랜드 개발,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을 연계 지원</p>
<p>○ 기술·경영애로</p>	<p>공정혁신 애로, 기업현장 경영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p>*법무(법률자문, 상사분쟁, 인수합병, 국제분쟁), 인사/노무(고용/산재보험, 근로계약, 노무관리), 세무/회계(세무·회계관리, 재무 분석, 조세법령 검토, 회계감사 자문), 기술/특허(기술동향, 기술 자문,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해외출연 안내), 정보화(정보화전략 자문, 정보화기반 구축), 마케팅(마케팅전략, 시장조사, 수출정보, 관세, FTA 안내), 기술개발 애로해소 등 지원</p> <p>*생산성 향상, 품질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인사/노무/조직운영, 재무, 마케팅전략, 글로벌화 전략 등 전문컨설팅 지원</p>
<p>○ 인력·연수</p>	<p>인력 부족, 기술(경영)전문 인력양성 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p>* 부족부문(생산직, 사무직, 기술직, 기술개발인력(석·박사, 학사·전문학사)을 기재하고, 부족부 문별 모집인원 및 월 급여조건을 기재할 것</p> <p>* 고급기술연구인력 활용,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 테크노닥터사업(퇴직과학기술자 취업), 청년취업인턴제, 산업기능요원제 등을 연계 지원</p>
<p>○ 사업전환 및 M&A</p>	<p>사업전환* 또는 M&A를 위한 자금,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또는 M&A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재</p> <p>*경쟁력 저하 업종의 사업을 축소(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p>
<p>○ 기 타</p>	<p>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행정규제, 대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업관련 인·허가, 공장설립·증축·이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p>

3. 사전동의서

○ 대표자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개인)인감 날인